

(공동 및 단독주택용)

<b>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서</b>						처리기간 14일
※사용자번호		※공급열매체		※계약종별		※접수일
공동주택명	공동주택소재지					
입주자대표회의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전화번호	
주택관리업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구 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신청전		신청후		신청전	신청후
계약종별						
계약면적		㎡	㎡		㎡	㎡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사유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요청일		※증설공급(변경공급, 재공급)예정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 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입주자대표회의					(인)	
신청자 주택관리업자					(인)	
<b>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b>						
주)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 또는 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한 발코니, 부대·복리시설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증서류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5.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서, 입주자동의서						
6.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7. 기타 사업자가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